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20. 6. 26.>

(표 지)

감리원 수첩

전력기술인단체

145mm×90mm(백상지 120g/㎡)

(제1쪽)

유 의 사 항

1.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시 이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발주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2.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,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3. 감리원 수첩의 재발급 사유(감리원 등급 변경,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잃어버린 경우 등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4. 감리원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제6항 및 제29조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5.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감리원 수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(제2쪽)

등록번호:

등 급:

성 명:

생년월일:

주 소:

증명사진 (2.5cm×3cm)

발급자 확인
㊞

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수첩을 발급합니다.

정해진 직인, 철인 및 발급자 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.

발급 연월일: 년 월 일

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

▲전력기술인 경력수첩, 설계사면허 현황 (제3쪽)

구 분	등 급	등 록 번 호	발급 연월일

▲학력

학 교 명	학 과 (전 공)	학 위	졸업 연월일

▲국가기술자격 (제4쪽)

자 격 종 목	등 록 번 호	합격 연월일

▲교육훈련 (제5쪽)

기 간 (일 수 / 시 간)	교 육 과 정 명	교 육 훈 련 기 관

▲상 훈 (제6쪽)

연 월 일	종 류	상 훈 기 관	근 거

▲제 재 (제7쪽)

연 월 일	종 류	제 재 기 관	근 거

▲근무처 경력(감리업체) (제8쪽 ~ 제9쪽)

근 무 처 명	근 무 기 간	근 무 기 간

▲주소 변경 (제10쪽)

날 짜	주 소	확인자(서명 또는 인)